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4. 22.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5. 4. 22.
- 다. 상 정 일 자 : 2005. 4. 25.(제12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청소행정과장 이정삼)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 1. 1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전용봉투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문구 및 내용 삭제(안 제9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 제정건은 2005. 1. 1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 됨에 따라 전용봉투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 하므로써 그동안 약취와 미관저해, 무단 투기행위 감시활동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낭비요인을 해소하여 대민 편의를 제고하고
-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입법취지에 맞게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문구를 삭제·정비 하므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 특히 환경부 제2차 음식물류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 부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체계 개선세부계획 등에 관련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점에 비추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